

## • 신정치 개혁당

법국민적인  
환경개선운동  
유도하겠다

**1** 우리당은 소중한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오염상태를 개선하여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하여 전 국민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환경개선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행정적 차원에서 15개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 관련 행정업무를 환경처에서 통합, 총괄하게 하며, 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으로서

첫째 :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관리에 필요한 재정 확보방안.

둘째 : 환경관리에 필요한 조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셋째 : 환경처와 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 환경 업무를 지방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추진하되, 환경오염원(발생지역)과 환경오염 피해지역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수계, 대기 등의 구역별 행정이 필요하다.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광역적, 국가적 차원의 환경기준설정과 지도감독을 환경처와 지방환경청에서 담당토록 하고, 지방자치 단체로 하여금 지역수준의 환경대책을 수립, 지도, 감시토록 하여 양자간 긴밀한 협조를 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환경처와 지방환경청의 업무를 각 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이양해야 하며 환경보전세를 자치단체로 이관하고 부족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 등에 관한 제도적 법률적 장치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법률적 차원에서 환경범죄를 단순한 행정사범으로 처리하던 점을 지양하고 사회적 해악을 감안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환경문제를 경제적 측면으로만 관측하는 환경처의 안목도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사법기관의 감시, 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환경형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고도화, 지능화되는 환경범죄 단속을 위해서 단속기관이나 법원에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환경오염 행위의 피해가 신속하고 완전하게 제거될 수 있는 배상 명령제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환경권이 보호되고 환경오염 행위자 및 기업형 범죄는 가중 처벌되어야 한다.

환경보호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문제이므로 정부당국은 공해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심판과 협조를 받고 경제 및 국토개발정책 입안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후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해방지기술을 개발하고 외국의 각종 공해 사양산업의 국내유입을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국민모두가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환경감시 활동이 적극 보장되어야 하고, 국민적 차원에서 유기적인 연대 협력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대하여 성실한 환경보호 업무 수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우리당은 당 환경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국내의 유수한 환경대책 단체와 공동보조를 취하여 환경보호운동을 범국민운동차원에서 전개할 것이다. 환경파괴 및 오염의 범죄를 살인·절도·방화 등과 같은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형사범죄와 동일한 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형법을 제정하여 이를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산업체와 기업이 배출하는 환경오염 물질에 대하여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이나 자연인에게도 정화 및 원상복구 피해배상 등 모든비용을 부담하는 배상 명령 제도를 실시하며, 공해방지 시설 설치와 무공해 대체 에너지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기금을 설치운용 하도록 한다.

**③ 보사위원회에 소속될 국회의원이 없음.**

**④** 우리당은 환경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국장 1인 부국장 1인 부장 1인 및 지구당위원장 1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당환경정책 자문은 서울대를 포함한 7개 대학의 10여명으로 구성된 환경전문 교수들의 대안제시, 자료 등으로 자문을 받고 있으며 공해추방운동연합, 녹색운동연합회 등 환경보호단체로부터 정기적인 강좌를 통하여 자료 입수, 오염 조사 결과 분석, 환경오염 추방 정책제시 등으로 자문을 받아 당 환경특별위원회가 연구한 정책 방안과 함께 환경 정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⑤** 우리당은 지난 92년 2월 창당된 새정당으로서 현재 제반분야의 활동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으며 ①번에서 제시한 환경개선운동의 방향에 따라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⑥ 우리나라 기업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일 예로는 수년전부터 합성세제 사용을 자제해온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생산기업들은 과열경쟁을 통하여 기준치의 10배이상의 인산염을 사용제조하여 수질을 오염시키고, 하천의 부영양화를 촉진시키는데 일조를 담당하면서도 이 기업체들은 적정 환경 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보다는,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벌금만 납부하면 기업으로는 더 이익이라는 생각에 공해방지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GNP성장을 대비 민간부분의 공해방지투자가 1983년 GNP성장을 18.3%대비 공해방지투자율 0.45%에서 1989년 GNP성장을 11.7%대비 공해방지투자율 0.76%로서 6년동안 0.31%만 증가 했을 뿐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정부는 환경문제의 심각함이나 책임감은 인식하지 못하고 자료를 은폐하고 수치를 조작하는 행위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법과 제도적측면으로 세계 각국은 이미 환경범죄에 대하여 환경침해 행위자는 환경형법을 제정해 환경범죄를 법정형과 가중형을 함께 부가하여 가중 처벌하고 피해 원상회복 의무를 강화함으로서 강력한 제재가 취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환경보전법은 환경문제가 행정통제 영역에 속하고 처벌 또한 환경행정의 원활성을 보장하는 수준이다. 또한 수사 담당기구의 전문성과 계속성이 확보되지 못해 검찰수사가 행정기관의 고발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처벌 역시 벌금형에만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체의 생명이나 건강에 해악이 발생한 경우 특별 가중처벌 법규가 필요하다. 또한 결과발생의 요소를 근거로 피해자 개념을 정립, 배상명령제도나 제정신청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며 악질적인 환경범죄자와 기업 환경조직의 특성을 악용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악덕기업은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는 현행법만으로는 미비하므로 기업조직체 책임과 기업조직체 내부 간부들에 대한 처벌법을 도입하여 환경보존의 책임소재를 구체화 해야 한다.

**⑦ 모든 국민이 환경범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국민각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할때 환경보전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함께 민간감시 활동이 국가의 정상적인 활동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단체가 상호 연대 협력을 통한 민간환경 감시 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각종 정보, 자료 등을 교환하고, 공청회, 세미나를 통하여 현재 우리의 환경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 스스로 환경범죄 감시자라는 인식을 할때, 우리 환경은 쾌적해지리라고 생각한다.

**산업체와 기업이  
배출하는 환경오염  
물질에 대하여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이나 자연인에게도  
정화 및 원상복구  
피해배상 등 모든비용을  
부담하는 배상 명령  
제도를 실시한다.**